안산대학교	모집단위개편및정원조정에관한 규정	규정번호	3-4-7
		제정일자	2016.11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2차
		소관부서	전략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집단위(이하 “학과” 라 한다)의 개편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‘모집단위 개편 및 정원조정’ (이하 “학과개편” 이라 한다)이라 함은 학과 신설, 통합 및 폐지, 명칭변경, 정원조정의 경우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학과개편 대상은 대학 학칙 제4조에서 규정된 학과에 적용한다.

제4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‘신설’ 이란 대학에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‘통합’ 이란 기존의 2개 이상의 학과를 1개 학과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‘폐지’ 란 학과의 입학정원을 중지함으로 학과를 폐쇄하는 경우를 말한다.
4. ‘명칭변경’ 이란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‘정원조정’ 이란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5조(학과개편의 원칙) 학과개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.

1.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
2. 교육부 구조조정 결과 조치에 필요한 경우
3. 대학 특성화 사업 수주 등 대외 경쟁력 제고 목적에 필요한 경우
4. 학과별 경쟁력 강화 등 대학의 자체 구조조정 목적에 필요한 경우
5.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의 수행
6.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

제6조(학과개편의 기준 및 유형) ① 학과 신설은 학생모집과 취업 경쟁력 등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한다.

② 학과 통합, 폐지, 정원조정은 학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한다.

③ 학과 명칭변경과 학제변경은 학과의 요청에 의해 신입생충원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대학정책 등을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(학과개편의 절차) ① 학과개편은 전략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② 전략기획처는 학과개편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관련부서와 학과에 요청할 수 있다.

③ 학과개편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.

제8조(학과평가) ① 학과평가는 신입생 모집이 있는 학과에 대해서 매년 실시한다.

② 학과평가 지표는 신입생충원율, 재학생충원율, 취업률, 중도탈락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배점 및 지표산정방식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후속조치) ① 통합 및 폐지 학과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졸업시 까지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.

② 통합 및 폐지 학과 소속의 교원은 다른 학과로 소속이 변경될 수 있으며, ‘전임교원의전공전환지원에관한규정’ 에 의거하여 전공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